



- 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-
사업별 추진계획



허가건축과

I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물량: 250동 (상반기 :170동, 하반기: 80동)

나. 사업비: 704,000천원

(단위: 천원)

계	국비(50%)	도비(15%)	시비(35%)	비고
704,000	440,000	132,000	308,000	우선가구 1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1동당 7백만원한도 지원

다. 지원방법 : 지자체에서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공사·용역 추진

라. 지원자격 및 요건

(1) 대상지역: 공주시 일원

(2) 지원대상

①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·처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(일반가구)

②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타취약계층(우선가구)

※ '우선지원가구' 를 우선지원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'일반가구' 지원

(3) 지원내용

- 적법절차에 의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·운반비용 등 우선가구 1동당 전액지원, 일반가구 1동당 352만원 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공사금액 보조

-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사업대상자 자부담(업체에 직접 지급)

※ 우선지원가구 대상 및 선정 기준

① 기초수급자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)

② 차상위계층(차상위계층 증명서)

③ 기타 취약계층(가, 나 모두 만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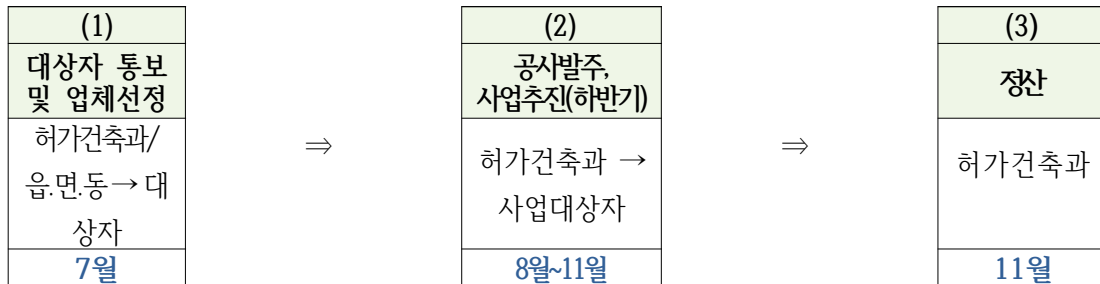
- 가. (대상) 한부모, 다자녀, 독거노인, 장애인 포함 가구 등

- 나. (조건) 소득수진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

①기초수급자 → ②차상위계층 → ③기타취약계층 대상 순 지원 *작은면적 우선 지원

2. 업무흐름도 및 단계별 역할

가. 업무흐름도



나. 단계별 역할

(1) 수요조사: 읍·면·동

○ 사업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

-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수요조사표에 의거 사전 문답을 실시
- 주택소유권 여부 확인 철저
- 대상 건축물이 주택인지 사전 확인

(2) 대상자 선정: 읍·면·동/ 허가건축과

○ 사업물량 배정: 허가건축과

- 읍·면·동 수요조사표에 의거 사업 물량 배정

○ 신청서 접수 및 제출: 읍·면·동

- 배정된 물량에 따라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제출
-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읍·면·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
- 신청서 상 슬레이트 면적 정확히 기재할 것 ⇒ 공사면적 산출기초
- 신청서 접수·제출 <서식1, 1-1>

(3) 대상자 확정 및 통보: 허가건축과/ 읍·면·동

○ 읍면동에서 신청서 최종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통보:허가건축과
-사업적격·서류 구비 여부 등검토·보완 작업 실시

○ 확정 대상자 개별 통보 및사업추진 안내:읍·면·동

- 시에서 업체 선정 후 직접 철거 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불가함

(4) 업체선정 및 공사발주: 허가건축과

(5) 사업추진: 읍·면·동 / 사업대상자 / 철거 업체

○ 슬레이트 면적조사:읍·면·동/사업대상자 /철거업체

- 신청인(건축소유자), 철거 업체, 읍면동 담당자 현장에 함께
참석하여 조사 실시

- 면적조사서<서식2, 2-1, 2-2> 작성 및 확인자 날인

○ 슬레이트 철거:읍·면·동/사업대상자 /철거업체

- 슬레이트 철거 :철거업체

- 입회 후 현장점검표<서식3, 3-1, 3-2>및 철거 면적 증감 확인서
(증감 시) 작성 <서식 제2의2호> :읍·면·동

- 공사비 자부담 발생 시 자부담 지급: 사업대상자

-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할 것: 위반 시 보조금 전액 지급 불가

(6) 정 산: 허가건축과

II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물량: 30동

나. 사업비: 162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계	국비(50%)	도비(15%)	시비(35%)	비고
162,000	81,000	24,300	21,980	슬레이트 면적 200㎡이하 지원

다. 지원 방법: 지자체에서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공사·용역 추진

라. 지원 자격 및 요건

※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중복신청 가능

○ 대상 지역: 공주시 일원

○ 지원 대상

① 주택 부지 외 소규모 창고, 축사 등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·처리 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(일반가구)

②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타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(우선가구)

※ ‘우선지원가구’를 우선지원하고, 물량이 있는 경우 ‘일반지원가구’ 지원

※ 우선지원가구 대상 및 선정 기준

① 기초수급자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)

② 차상위계층(차상위계층 증명서)

③ 기타 취약계층(가, 나 모두 만족)

- 가. (대상) 한부모, 다자녀, 독거노인, 장애인 포함 가구 등

- 나. (조건) 소득수진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

①기초수급자 → ②차상위계층 → ③ 기타취약계층 대상 순으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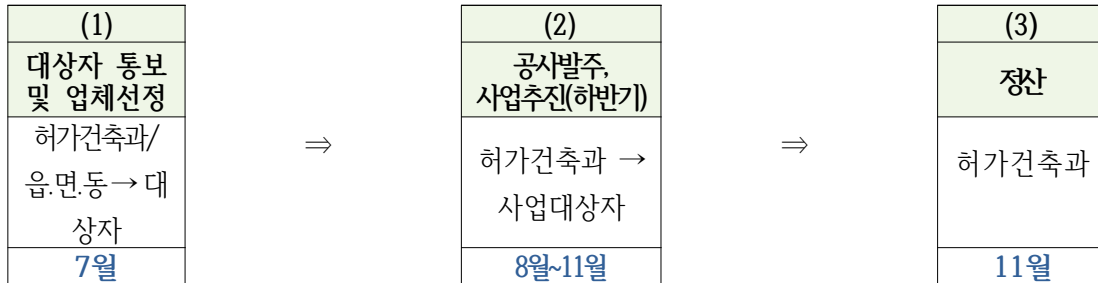
마. 지원내용

- 적법절차에 의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·운반비용 등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㎡이하 공사금액 보조

- 사업비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(업체에 직접 지급)

2. 업무흐름도 및 단계별 역할

가. 업무흐름도



나. 단계별 역할

(1) 수요조사: 읍·면·동

○ 사업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

-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수요조사표에 의거 사전 문답을 실시
- 소유권 여부 확인 철저
- 대상 건축물이 비주택인지 사전 확인

(2) 대상자 선정: 읍·면·동/ 허가건축과

○ 사업물량 배정: 허가건축과

- 읍·면·동 수요조사표에 의거 사업 물량 배정

○ 신청서 접수 및 제출: 읍·면·동

- 배정된 물량에 따라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제출
-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읍·면·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
- 신청서상 슬레이트 면적 정확히 기재할 것 ⇒ 공사면적 산출기초
- 신청서 접수·제출 <서식1, 1-1>

(3) 대상자 확정 및 통보: 허가건축과/ 읍·면·동

○ 읍·면·동에서 접수된 신청서 최종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: 허가건축과

- 사업적격·서류 구비 여부 등 검토·보완 작업 실시

○ 확정 대상자 개별 통보 및 사업추진 안내: 읍·면·동

- 시에서 업체 선정 후 직접 철거 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방식은 불가함

(4) 업체선정 및 공사발주: 허가건축과

(5) 사업추진: 읍·면·동/ 사업대상자/ 철거업체

○ 슬레이트 면적조사: 읍·면·동/ 사업대상자/ 철거업체

- 신청인(건축소유자), 철거 업체, 읍면동 담당자 현장에 함께 참석하여 조사 실시

- 면적조사서<서식2, 2-1, 2-2> 작성 및 확인자 날인

○ 슬레이트 철거: 읍·면·동/ 사업대상자/ 철거업체

- 슬레이트 철거: 철거업체

- 입회 후 현장점검표<서식3, 3-1, 3-2> 및 철거면적증감 확인서(증감 시) 작성

<서식 제2의 2호> : 읍·면·동

- 공사비 자부담 발생 시 자부담 지급: 사업대상자

-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할 것: 위반 시 보조금 전액 지급 불가

(6) 정 산: 허가건축과

Ⅲ 주의사항

○ 신청자 주택 소유권 증빙자료 종류

- 종류

① 등기부등본 ② 건축물 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④ 건축물 소유 사실 확인서

- ①~④순으로 선순위 자료가 없을 시후순위 자료 구 비할 것

- 자료 간 소유자가 상위할 때 선순위자료 효력 인정

- **미상속 건축물, 소유자 미상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**

○ 신청대상자 적격 판단

- **소유자 신청 원칙.** 단, 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가능

이 경우 사업대상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신청자이며, 각종 증빙 자료는 신청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

○ 건축물 철거 시 해체(신고) 절차 안내

-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(신고), 해체공사 착공 신고, 해체공사 완료신고 등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, 미 이행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됨